가계대출 상품설명서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◎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o **가계대출**은 가계가 생계유지 등 기타 사용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총칭하며, 대표적으로 **신용대출,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**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.
- o 신용대출은 고객님의 소득 등에 따라 평가되는 **개인 신용도에 기반**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가 산정되는 대출상품입니다.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,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나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동일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◎ 민원·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

- O1. 대출한도를 조회했는데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나요?
 - → **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**. 다만, 대출상품 이용 시, **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**,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Q2.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가요?

→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여신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,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Q3.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
→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<mark>중도상환수수료</mark>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예: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, 최대 200만 원 부과)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
Q4.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?

→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,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, 대출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
◎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- 이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[6.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]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◎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→ 당사 **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sb.koreainvestment.com)**또는 **고객센터(1577-6333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→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| 상 품 명 | | 상환 방법 | 만기일시원금균등 | ^{뎶리금균등}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적용 금리 | % | 대출 금액 | | 원 |
| 금리적용방식 | 변동 고정 혼합 | 대출 기간 | 취급 후 | 개월 |
| 중도상환수수료 | □ 부과대상 □ 부과대상 아님 | 채권 보전 | □담보 □신용 □기타(|) |

2 수수료 등 비용부담

V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고객님께서 <mark>원리금(대출원금+이자) 상환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[아래의 수수료 등]</mark>이 포함됩니다. **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며,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**.

| \odot | 고객님께서 | 가입한 상품 | 에 석용되는 수수 | 수표 등 비용의 | 경우, 솨즉 저 | 크막스(🛂) | 에 뾰시됩니나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| | | | | |

| 중도상환수수료 : 중도상환대출금액 | () % |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| |

- ☞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() 년까지 적용합니다.
- ※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**고객이 부담**하는 금액입니다.
 - · 다만,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**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**에는 <mark>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</mark>됩니다.

| □ 인지세 : | (|) 원 |
|-----------|---|-----|
| │ │ 인지세 : | (|) 원 |
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

| 대출금액 | 5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0억원 초과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인지세액 | 비과세 | 7만원 | 15만원 | 35만원 |
| 고객부담 | - | 3만 5천원 | 7만 5천원 | 17만 5천원 |
| 회사부담 | - | 3만 5천원 | 7만 5천원 | 17만 5천원 |

□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

| 구분 | 부담하게 되는 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/말소 | · 건당 비용 발생 (보통 건당 50,000원) |
|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주소 변경 | · 1건 : 30,000원 · 2건 이상 : 1건당 10,000원 추가 |
| 확인 서면 (등기필증이 없는 경우) | · 법무사 보수료 30,000원 |
|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| ·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% X 일별 채권할인율(근저당권 설정일 기준) ※ 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|

□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비용

※ 다만,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.

| 구분 | 부담하게 되는 금액 |
|-----------------|--|
| 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 | · 등록면허세 + 지방교육세 + 등기신청 법무사수수료 |
|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 | ·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, 주소지,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|
|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| ·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|

| 담보신탁수수료 : 담 <u>!</u> | 보신탁을 이용하여 부 동 • | 산담보대출 을 받을 경 | 병우 담보신탁보수 및 | Į 신탁회사로의 · | 등기이전 관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 | <mark>담</mark> 합니다. | | | | |

| □ 기타 수수료(비용) :항목 () 금액 () 금액 () | <u> 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
- ◎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◎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- ◎ **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**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 수수료,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.

3 대출이자율

◎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**고정금리, 변동금리** 및 **혼합금리** 방식으로 구분되며, 고객님이 신청하신

상품은 [금리] 방식의 상품입니다.

| | 고정금리 | 변동금리 | 혼합금리 |
|----------|---|--|--|
| 운용 형태 | 금리 | 급리 기간 | 급리 고정급리 변동급리 구간 구간 |
| 특징 | ▶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| ▶ 일정주기(3/6/12개월 등) 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| ▶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 |
| 장점 | ▶ <mark>시장금리 상승기</mark> 에 금리인상이 없음 | ▶ 시장금리 하락기 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| |
| 단점 | ▶ 시장금리 하락기 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| ▶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 ※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 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| ▶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 계획에 맞춘 운용 가능 |

◎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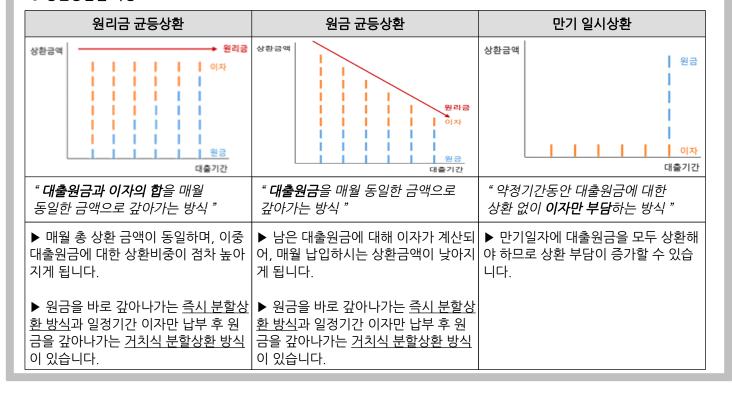
- o **대출금리는** 저축은행의 **자금조달금리**에 각종 **원가요소**와 목표이익률(마진)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o **대출금리**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**대출 기준금리**와 **가산금리의 합**으로 **표시**됩니다

| | 가산금리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대출 기준금리 | 리스크 프리미엄 | 리스크관리비용 등 원가 | 목표 이익률 | ○○ 가감조정 전결금리 | " 육교 |

- **대출 기준금리**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, 저축은행은 COFIX, 금융채,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**가산금리**는 저축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 하는 금리를 말하며,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.
 - 리스크프리미엄: 저축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 - 원가요소 : 고객의 신용도·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, 업무원가(인건비·전산처리비용), 세금 (교육세 등) 및 준조세성 부담금(보증기관 출연료 등) 등
 - 목표이익률: 저축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
 - 가감조정 전결금리 : 부수거래(급여통장 개설·카드실적·수신실적 등) 감면금리, 전결 조정 금리 등
 - o **결정된 대출금리**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- o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**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**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 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 대출 상환방법

◎ 상화방법별 특징



◎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·이자율·시기

- o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◎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(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%로 대출받은 경우)
 - ※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,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o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년 | 1,810만원 | 500만원 | 2,310만원 | 8,190만원 |
| 2년 | 1,900만원 | 410만원 | 2,310만원 | 6,290만원 |
| 3년 | 1,995만원 | 315만원 | 2,310만원 | 4,295만원 |
| 4년 | 2,095만원 | 215만원 | 2,310만원 | 2,200만원 |
| 5년 | 2,200만원 | 110만원 | 2,310만원 | 0원 |
| 합 계 | 1억원 | 1,550만원 | 1.155억원 | - |

o 원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년 | 2,000만원 | 500만원 | 2,500만원 | 8,000만원 |
| 2년 | 2,000만원 | 400만원 | 2,400만원 | 6,000만원 |
| 3년 | 2,000만원 | 300만원 | 2,300만원 | 4,000만원 |
| 4년 | 2,000만원 | 200만원 | 2,200만원 | 2,000만원 |
| 5년 | 2,000만원 | 100만원 | 2,100만원 | 0원 |
| 합 계 | 1억원 | 1,500만원 | 1.15억원 | - |

o **만기 일시상환** 방식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 출 잔액 |
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2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3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4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5년 | 1억원 | 500만원 | 1.05억원 | 0원 |
| 합 계 | 1억원 | 2,500만원 | 1.25억원 | - |

◎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

- o **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**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- o **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**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, <mark>만기연 장이 되지 않을 수</mark> 있습니다.

5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

- ※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<mark>재산상 손실</mark>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 당권(근질권)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-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,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(저당권·질권 등)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© **담보권의 설정**: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및 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| 담보권 | 대상 대출상품 | 담보의 대상 | 담보권 설정의 절차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근저당권 | 부동산담보대출 |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| ▶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 |
| 근질권 | 예금담보대출 | 담보로 제공한 예금 | ▶ 예금에 근질권 설정 |

○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

o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,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

소유권을 상실 하게 됩니다

| 설정 담보권 | 대 출 상품 예시 | 담보권의 실행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근저당권 | 부동산담보대출 | ▶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(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)한 후 그 경매 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|
| 근질권 | 예금담보대출 | ▶ 저축은행은 대상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충당 |

6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 부담

- © 연체이자율은 **[약정금리 + 연체가산이자율]**로 적용합니다.
 - · 연체가산이자율은 **최대 연 3%**이며, 연체기간별로 차등하거나,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 - ·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()% 로 합니다.
- ◎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 -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- ·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**1개월이 경과하면**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**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**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❷ 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ㆍ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❸ 「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·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 이상 (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)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❹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

ㆍ기하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⑤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

- ·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,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※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**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, 그 밖의 불이익

- ◎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<mark>단기</mark>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(신용카드 정지 등) 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 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◎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 - o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◎ **장기**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**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**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**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**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(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, 신용점수 하락 등)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7 |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청약철회권

- © 일반금융소비자는 *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*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- ◎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**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** 으로 *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*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<u>대출금</u>과 이에 대한 <u>이자</u>, 대출과 관련하여 <u>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</u> 하여야 합니다.
- ◎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◎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 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나, 위법계약해지권

◎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**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**.

- o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- 이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- o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- o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- o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◎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<u>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</u>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| 다. 금리인하요구권 |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| ☐ 대상 | 비대상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7.6969416 | | | |

- ◎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<mark>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</mark>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<mark>리인하를 요구</mark>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- ◎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◎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◎ 저축은행은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라. 자료열람요구권

- ◎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<u>분챙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</u>으로 저축은행에 <u>자료의 열람을</u>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o 이 경우, **열람요구서**를 **제출**하여야 하며, **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**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◎ 저축은행은 <u>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차료를 열람</u> 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 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

8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◎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◎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- o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- o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(한도대출),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.
 - o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**자격이 유지되는 경우**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9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

- ◎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 - o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 - o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 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 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**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**.

◎ 이자 납입방법

- ㅇ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<u>매월/매분기/매년)</u>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o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◎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

o 대출신청에 따른 <u>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</u> 받으시겠습니까? 다만, 신용정보법(연체·부도·개인 회생 등)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.

| 신청 | 신청하지 않음 |
|----|---------|

◎ 대학생·청년층 확인서

○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·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,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며,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.

| 설명을 받았음 | ☐설명을 받지 않았음 | ☐해당사항 없음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
◎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

- o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,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(변경 신청전)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상환 → (변경 신청후) 비용, 원금, 이자 순서로 상환
- ※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(이자 및 원금)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,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◎ 채무조정 지원

- 이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o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, 채무조정 방법(원리금 상환유예, 만기연장 등)을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.
- ※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, 절차,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10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| |
|---|-----------|
| ●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 | |
| → □예 □아니오 | |
| ❷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<u>3년 이내의 기간 동안</u> 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<mark>중도</mark> 생할 수 있습니다. 저축은행 직원으로 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 | 상환수수료가 발 |
| → □예 □아니오 | |
| ●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, 연체이자를 일부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 | 체이자 전액을 납 |
| → □예 □아니오 | |
| 대출금 연체 등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<mark>불이익이 발생</mark> 할 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<mark>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</mark> 이 남아 있을 인하셨습니까? | |
| → □예 □아니오 | |
| ○ 본인은 한국투자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, 고객부담비용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하여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| |
| 고객확인 : | (서명/인) |
|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콜센터(1577-6333) 또는 인터넷 (http://sb.koreainvestment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점 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| |
| | |

※ [부록]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| 용어 | 설명 |
|---------|--|
| 개별거래 | ■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 |
| 한도거래 | ■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 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 |
| 압류 | 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 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|
| 강제집행 | ■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. |
| 담보권 | 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,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. |
| 근저당권 | 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. |
| | ■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 |
| 근질권 | 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 |
| | ■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 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 |
| 0155111 | ■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 소유 담보물을 채 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|
| 양도담보 | ■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 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. |
| | ■ 위탁자(소유자)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(신탁회사)에게 신탁(소유권 이전)하고 수탁자(신탁회사)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. |
| 담보신탁 | ■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(공매)하여 채권 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. |

| 용어 | 설명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대위변제 | ■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(대위변제자)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(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)을 취득합니다. |
| 채무인수 | ■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(구채무자)로부터 제3자(신 채무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|
| | ■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(매수인)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 보대출도 제3자(매수인)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. |
| 채권양도 | ■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(구채권자)로부터 제3자(신 채권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|
| 세면정도 | ■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(구채권자)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저축은행(신채권자)에 양도(담보로 제공)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. |
| | ■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. |
| 기한의 이익(상실) | ■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. |
| | ■ 다만,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(저축은행)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 게 됩니다. |
| 신용정보 | ■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), 신용거래정보(대출정보 등), 신용도 판단정보(연체정 보 등), 신용능력정보(재무정보 등), 공공정보(체납정보등)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. |
| 신용평점 | ■ 개인신용평가회사(CB사)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 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. |
| | 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. |
| - 담보인정비 율 | ■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|
| (LTV, Loan-To-Value) | ■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. |
| 총부채상환비율 /DTI | ■ 연소득 대비 부채'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*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,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|
| (DTI, Debt-To-Income) | ■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(투기지역 등)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. |
| 총부채원리금상환비 율 (DCD | ■ 연소득 대비 부채 [*] 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*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|
| (DSR, Debt-Service-Ratio) | 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 니다. |
| 전세권 | 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·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|

※ [부록2] 원리금 연체에 따른 불이익,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시

| 구분 | 예시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원리금 연체에 따른 불이익 | ■ 원금 1억원, 약정금리 연5%, 연체이자율 연 8%(연체가산이자율 3%) 약정된 대출의 원리금이 연체된 경우 → 최대 월 연체이자 679,452원(100,000,000 × 8% ÷ 365 × 31) 발생 |
| 중도상환수수료 | ■ 원금 1억원, 대출기간 1년, 중도상환수수료율 2% 약정. 6개월 후 원금 1억원 전액 상환 시 → 중도상환수수료 1,000,000원(100,000,000 × 2% ÷ 12 × 6) 발생 |